

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「문화재보호법」에서 분리·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,
-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문화재보호법 2개 분야(예능, 기능)→ 7개 분야 확대(안 제2조)
- 문화재보호법은 “원형 유지”,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“전형 유지”를 기본원칙으로 함(안 제3조)
- 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18조)
- 도 무형문화재 및 긴급 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(안 제19조, 제20조)

- 도 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,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, 지정 해제 등을 규정(안 제21조~제23조)
- 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수교육조교 등의 인정과 해제(안 제24조~제28조)
- 도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등의 위탁,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, 제30조)
- 도 무형문화재의 보호·육성, 전수교육 이수증, 전수장학생, 도무형문화재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3조~제36조)

5. 검토의견

- 위 제정조례안은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「문화재보호법」에서 분리·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종전의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서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임.
- 무형문화재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조례로 제정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·육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.
- 다만, 안 제9조(회의)의 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 구성인원(15명 이내)과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인원(20명 이내)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위원 중 회의 구성인원 지정문제 등에서 혼선의 우려가 있음. 따라서 일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,
- 안 제42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규정을 보면 도무형문화재위원, 무형문화재 정기조사, 재조사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,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(수뢰, 제삼자 뇌물제공 등)

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상위법령인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5조를 보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 시·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만을 명시하고 있음. 그러므로 조례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. 끝.